##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5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오기형 • 박용갑 • 박민규

조계원 • 박지원 • 박해철

김성회 · 이광희 · 김영환

문금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 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8호).

법률 제 호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8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제41조(압류금지 재산)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체납자의</u> 생계 유지에 필요	18. <u>「민사집행법」 제246</u> 조의2		
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	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령령으로 정하는 것	<u>예금 등 체납자의</u>		